<총동아리 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안동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안동대학교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대학 문화 창달의 담당자로 동아리인의 역량을 한데 모아 대학의 자율과 창조적 대학 문화를 구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학원의 민주적인 동아리 활동과 각 동아리 활동, 각 동아리의 권익, 성과를 보장하며 동아리 내의 문제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는 안동대학교 내에 소재를 둔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전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등록된 동아리의 대표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2. 각 동아리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5.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대해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각 동아리는 행사에 따른 합당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 6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집행부, 중앙동아리 대표자)
2.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
3. 분과 (종교, 취미교양, 예술 봉사, 체육)
4. 집행부 (총무국장, 각 분과의 분과장)

제 7 조 (본회의 학교 운영 합의)

1.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절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가. 동아리 회원의 권익과 일정한 경우

나. 동아리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
다.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 회원에 관한 건
라. 기타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인정한 경우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 8 조 (지위)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실질적인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이며 일반적인 입법 권한을 갖는다.

제 9 조 (구성)

1. 대표자 회의는 운영 위원과 각 동아리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부재시 각 동아리에서 위임장을 가진 회원을 보내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모든 동아리 회장들과 또는 위임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3번 이상 미참여시 가동아리로 강등한다.

제 10 조 (의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제 11 조 (권한)

1. 본회의 활동과 학교 당국의 사무에 관한 서류 제출 및 학교 당국자의 출석요구
2. 집행부서와 분과의 신설, 통폐합권
3. 회장단의 불신임 발의 및 의결권
4. 운영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 12 조 (소집)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1. 정기 회의 : 정기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매 학기 2회 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 임시 회의 :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운영 위원회의 2/3이상의 요구 또는 재적 동아리1/3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소집 공고는 최소 3일 이전에 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기 회의는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하지만 임시 회의는 과반수 참석을 조건으로 둔다. 또한 과반수 참석이 회지 않을 시에는 재 통보하여 모인 대표자에 한해서 의결하며 그 의결

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 (의결)
1.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 사항은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단 불신임 발의 의결은 재적 동아리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 집행하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사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 위원회

제 14 조 (지위)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 15 조 (구성) 본회의 회장, 부회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대외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의장) 운영 위원회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제 17 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2.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 사항 중 운영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3. 각 기구의 예, 결산안을 심의한다.
4.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권
5. 운영 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참석 및 활동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회칙 개정안 발의권
7.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8.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을 대표자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9. 신규 정식 동아리의 자격을 심의하여 분과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
10.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업무 및 권한을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1. 본회의 회칙과 규약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12.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동아리를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8 조 (소집) 운영 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1. 행사나 공연, 여러 활동, 최소한 1주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 위원회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

집한다.
3. 회의는 재적 위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 19 조 (의결) 운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인 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집행부

제 20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 21 조 (구성) 집행부는 총무, 각 분과 부장들로 구성하며 각 부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1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22 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대표자 회의 및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독자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동아리 대표자 회의와 운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회장, 부회장 및 임원

제 23 조 (회장의 지위와 역할)
1.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전학 대회 대의원이 되며, 중앙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이 된다.
3. 동아리인의 모든 자율적인 행사를 주관하며 제반 업무 상황을 관할한다.

제 24 조 (회장의 임무) 전체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25 조 (회장의 권한)
1.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권
2.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 위원 소집권
3. 집행부서 및 특별 기구 구성권
4. 집행부장과 특별기구장 임명 및 면직권
5. 회칙 개정안 발의권
6. 징계 발의권
7.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제 26 조 (부회장의 지위와 권한)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회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총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 위원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전학 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 27 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금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회장단의 연임이 가능하다.(단, 회장단도 부장이 가능하다.)

제 28 조 (임원의 신분 보장)

1. 회장 및 부회장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 및 동아리인 총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2. 각 부장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29 조 (탄핵 및 해임 의결)

1.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 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 재적 인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집행부의 각 부장 및 특별기구장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된 경우 회장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
4. 해임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제 6 장 분과

제 30 조 (목적) 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촉진하며 분과 내의 발전에 노력한다.

1. 종교분과(종교 관련)
2. 취미교양분과 (다양한 취미, 교양)
3. 봉사분과 (봉사 관련)
4. 체육분과 (체육 관련 등)
5. 예술분과 (음악, 공연 등)

제 1 절 분과동아리대표자회의

제 39 조 (구성) 분과부장 및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 31 조 (의장) 분과 동아리 대표자회의(이하 '분과대표자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분과 부장이 맡는다.

제 32 조 (업무 및 권한)

1. 분과의 집행부서장 인준권
2. 분과 회장단 불신임 발의 및 의결권
3. 총동아리연합회의 행사를 분과별로 주관해서 담당한다.
4. 신규동아리 등록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5. 소속동아리의 활동을 승인하고 총동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 (의결) 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에 준한다.

제 2 절 분과장

제 34 조(분과장)

1.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위원과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된다.
2. 분과대표자회의와 분과 의장이 된다.

제 35 조(분과장의 권한)

1. 분과대표자회의소집권
2. 집행부서장 및 특별기구장 임명 및 면직권
3. 분과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제 3절 기타

제 36 조(회의소집)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분과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제 7장 재정

제 37조 (수입)

1. 본회의 재정은 학생지원과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한다.
2. 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익금이 된다.
3. 각 사회 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 38 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1. 본회의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한다.
2. 본회의 예산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집행한다.

가. 안동대 학우를 대상으로 하며 총동연 사업과 부합될 때 우선순위로 한다.

나. 안동대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한다.

다.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9 조 (예산 및 결산보고) 예산과 결산은 매학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한다.

제 40 조 (예산 집행)
1. 예산 심의, 편성된 내용을 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2. 예비비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과 총무가 집행한다.
3. 연합회에서는 행사가 있는 동아리에 정당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1 조 (이월) 매 회기 흑자 잉여금은 다음 회기의 예산으로 자동 이월된다.

제 42 조 (이의 제기) 예산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 동아리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재심의한다.

제 8 장 정식동아리 갱신

제 43 조 (갱신) 기존 등록을 필한 동아리는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필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는 연합회 양식에 의거한다.

제 44 조 (등록 기간) 매 학기 초에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한다.

제 45 조 (구비 요건)
1. 동아리 갱신 신청서
2. 활동 상황 보고서
3. 15명 이상 회원 명단 1부

제 9 장 정식동아리 승격

제 46 조 (등록 기간) 승격을 희망하는 가동아리는 1학기 종강 전, 2학기 종강 전 본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에 등록요건을 구비해서 등록한다.

제 47 조 (승격 심사) 승격을 희망하는 가동아리는 등록 접수 후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분과를 배정한 후 분과대표자회의에서 심사를 한 뒤 신규 정식동아리 등록 승인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제 48 조 (승격 조건)
1. 회장은 3학년 이상 재학생이 가능하다.
2. 동아리 회원 15명 이상인 동아리 (타동아리 회원과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3.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뚜렷한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4. 3개 학과 이상으로 회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단대 동아리로 분류한다.)
5. 가동아리 등록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활동한 가동아리 만이 정식 동아리 승격 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6. 정식동아리 승격심사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 동아리로 인정된다.

제 49 조 (동아리방 배정)
1. 동아리 방은 정식 동아리 중에서 본회에서 배정하며 배정 기준을 운영 위원회에서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단대 동아리는 단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즉시 폐지한다.
3. 총동연의 회칙과 동아리 방 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방을 배정한다.

제 10장 징계

제 50 조 연합회나 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이나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 51 조 (경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1.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1회 이상 불참한 동아리
2. 동아리 활동이나 실적 성과 같은 것들이 매우 부진할 때 운영 위원회에서 결의된 동아리
3. 전체 동아리에 저해되는 행위의 발생시(회원 개인의 행위는 소속 동아리에서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 외에 동아리 방 관리수칙 및 총동연 회칙에 부합될 경우 단계적인 경고를 조치한다.
5. 1년 동안 3회 경고를 받는 즉시 자동적으로 가동아리로 강등된다.

제 52 조 (동아리 등록 취소)
1.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동의로 취소된다.

2.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3일 이내에 회장이 공고한다.
3.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동아리 명의로 학내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회장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통보한다.
4. 추가 등록 기간 내에도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는 자동 등록 취소되며 이를 회장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통보한다.
5.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공고 후 6개월 간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영구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제 11 장 선거

제 53 조 (선거권)
1.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장을 포함하여 선거인단은 선거권을 가진다.
2. 선거인단은 투표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 54 조 (피선거권) 회장, 부회장은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2. 재적 동아리 회장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55 조 (선거 시기)
1.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 56 조 (선거 관리 위원회)
1. 구성
가. 총동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동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로 구성한다.
2. 구성시기 : 선거 개시 2주일 전까지 구성한다.
3.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4. 업무 및 권한
가. 입후보자 자격 심사
나. 선거인 명부 작성
다.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라. 재선거 여부 결정
마.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바. 타 기구나 임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세칙을 따른다.
5. 선거 절차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일을 선거일 2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동이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다. 유세는 2회 이내로 하고 자율적인 선거 운동을 인정한다.
6. 후보자 등록·후보자는 선거 개시 7일 이전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력 및 간단한 자기 소개서
나. 사진파일
다. 재학증명서, 학적부
라.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 등록원
7. 당선
가.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며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8. 보궐 선거 : 회장, 부회장 유고 시 또는 탄핵될 시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단, 잔임 기간이 100일 미만일 경우는 집행부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9. 총동아리 연합회가 선거로 구성되지 않을시, 모든 하위조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12 장 회칙 개정

제 57 조 (발의) 본회의 원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발의
2. 동아리 대표자 1/4이상의 발의
3. 재적 동아리 10개 이상의 회원 300인 이상의 발의
4. 운영 위원 1/2이상의 발의

제 58 조 (의결의 발효)
1. 회칙 개정의 발의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정된 개정안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3 장 부칙

제 1 조 (규약의 개정) 본회의 회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르며 특별히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회칙보다 하위에 둔다.
제 2 조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일 개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학생회 등 자치활동 학칙-

제59조(학생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학생자치단체의 조직) ① 학생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보호 육성한다.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외부기관 또는 특정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4. 봉사활동 기타 대외활동
②간행물의 편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연구, 수업 등 대학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3조(학생지도) ① 각 학과(부)는 매학년 초에 계획을 세워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에 응한다.

2025 국립경국대학교
제1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세칙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세칙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하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선거원칙)

선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2. 공명선거를 보장한다
3. 회장, 부회장은 동시에 입후보해야하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원 11인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제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3조(선거권)

1.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장을 포함하여 선거인단은 선거권을 가진다.
2. 선거인단은 투표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3. 선거 당일에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동아리 회장이 투표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총동연 선관위에 보고된 해당 동아리 회장이 직접 지명한 대리자에 한해 당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 4조(피선거권)

1. 회장, 부회장은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여기서 본회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8장에서 의거하는 정식 동아리에 한한다.
2.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회원으로 한다.
3. 재적 동아리 회장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제 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라 '총동연 선관위')를 둔다.
2. 총동연 선관위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며, 차기 총동아리연합회를 선출함을 최우선 목표에 둔다.
3. 총동연 선관위는 총동아리연합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 본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로 구성된다.
4. 총동연 선관위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을 둔다.
5. 총동연 선관위는 선거 14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6. 총동연 선관위 위원들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거전까지 탈퇴할 수 없다.

제6조(업무 및 권한)

총동연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입후보자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4.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5. 선거쟁송의 심사
6.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7. 재선거/보궐선거/선거연기의 결정
8.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9.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 및 적용
10. 총동연 선관위의 규정/규칙의 재/개정
11.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 4장 선거공고 및 등록

제7조(선거의 공고)

총동연 선관위는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단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8조(입후보자의 등록)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총동연 선관위가 공고한 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 기호 순번의 경우 제출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정, 부 각 2부

2. 후보자 학적부 정, 부 각 2부
3. 재학증명서 정, 부 각 2부
4. 이력서 정, 부 각 2부
5. 서약서 정, 부 각 2부
6. 선거운동본부 명단 2부
7. 선거공약 2부
8. 추천인 서명부 1부 (재적 동아리 회장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서명부)

제9조(선거운동본부)

1. 선거운동본부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에 따라 동아리 회장단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구가아니므로 총동아리연합회 운영 기구에 해당하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때문에 선거운동본부의 명단 정/부 후보와 선거운동인원의 직함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각종 선거 유인물과 입후보 서류에 기입한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입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입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행위는 본 세칙 및 선거관력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4.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선거운동본부 명단을 제출해야한다.
(단, 선거운동본부 명단 회원은 재학생으로 하며,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의 정의)

1. 본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11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본부는 본 세칙에서 총동연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유인물 게시)

1.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선거운동 기간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홍보 유인물은 총동연 선관위가 지정한 기간 동안 각 선거운동본부 SNS 계정에 계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홍보 유인물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부 입후보자 인적사항 게시물 1개,공약 안내 게시물 1개로 제한한다.
3. 홍보 유인물을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 외에 게시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부여한다.
4. 홍보 유인물을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부여한다.

제13조(등록취소 및 선거운동의 제한)

건전한 선거풍토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선거운동 본부는 등록취소 또는 선거운동을 제한(경고 부여)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금품 및 물품 수수행위
2. 총동연 선관위가 개최하지 않은 집단적인 소견발표 행위
3. 기본 선거질서를 해하는 각종 폐습 행위
4.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선거운동본부의 폭력 등 기본 선거 질서를 해하는 각종 폐습행위
5. 기타 본 세칙 및 총동연 선관위 규정의 위반

제14조(경고)

1. 선거운동이 본 세칙 및 총동연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초지할 수 있다.
2. 경고 3회로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당해 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제 6장 투표

제15조(투표 및 개표)

1. 투표는 선거 당일에 실시하는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2. 투표시간은 19:00부터로 한다.
3. 개표는 현장투표가 끝난 후 현장투표 장소에서 실시한다.
4. 참관인은 현장투표한 모든 동아리 대표자 회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5.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1/2 득표를 해야 하며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6. 투표 개표 결과 동률일 경우 경고 부여 횟수가 적은 선거운동본부를 당선인으로 인정한다.
7. 총동아리연합회가 선거로 구성되지 않을 시, 모든 하위조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8.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총동연 선관위는 당선공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 및 공고한다.
9. 선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기된 이의에 대해 문제가 없을 시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10. 대면 선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 개시 7일 이전에 새로운 선거 방식을 공지한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제16조(구성)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진행이 금년 내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 3월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때 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며 3월 재선거 이전의 모든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2. 비대위는 금년 총동아리연합회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로 구성한다.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최소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 구성된 비대위의 자율적 기준으로 선발한다.
3. 비대위원장은 구성된 비대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제17조(해체)

1. 비대위는 3월 재선거와 함께 선관위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선거 이후 일괄 해체된다.

제8장 보궐/재선거

제18조(보궐선거)

1. 당선인으로 선정된 정/부 후보가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 사퇴할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위의 유고 개념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3.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9조(재선거)

1. 총동연 선관위가 처음 공고한 입후보 기간내에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을 시 바로 다음 주 기간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거 진행은 총동연 임기 내에서 실시하며, 임기 기간 내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비대위로 권한을 인계 후 진행한다,
2. 재선거는 위 총동연 선관위 선거 시행세칙을 동일하게 준수한다.

<부칙>

제 4조 3항

1. 한 동아리 회장이 복수의 선거운동본부에 추천인 서명이 가능하다.

제 12조 2항

1. SNS 계정의 경우에는 (준) 기호를 명시한다.

제 15조 6항

1. 경고 부여 횟수로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시, 당일 투표를 종료하고 3일 뒤 재투표를 실시한다.